

『인구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4.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12.16.



국가데이터처

〈차 례〉

I .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6
III . 자료수집	23
IV . 통계처리 및 분석	32
V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4
VI . 통계기반 및 개선	4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인구동향조사(승인번호: 제101003호)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과

1.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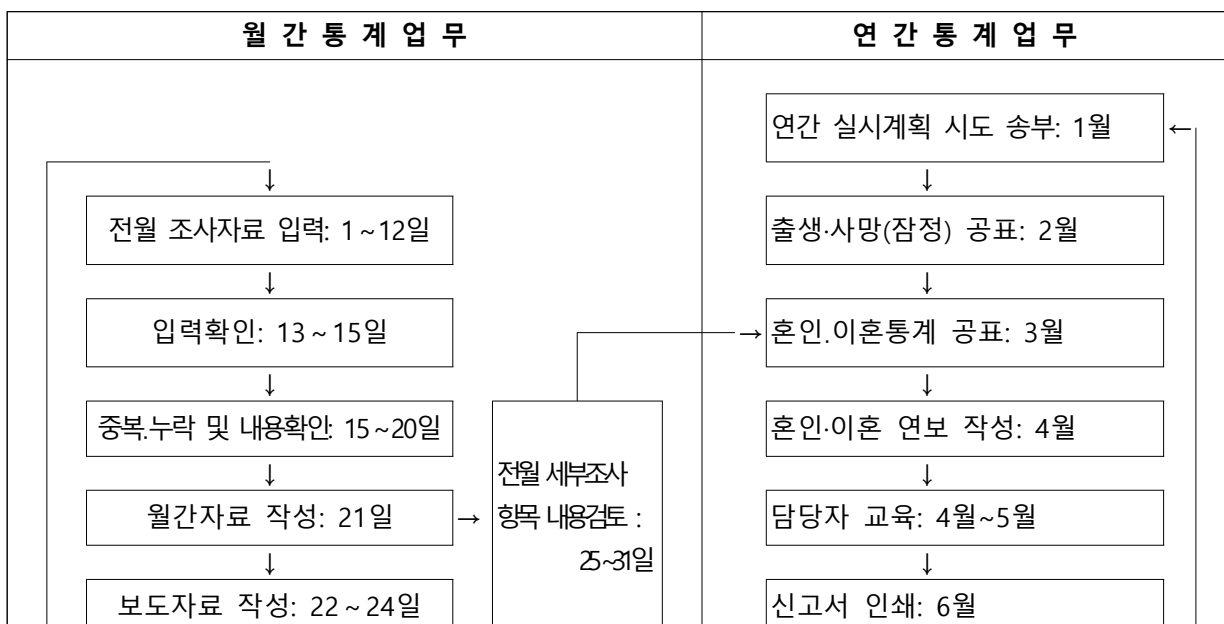
-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는 4종 신고 이외에 기아발견조서, 실종신고, 혼인취소, 보호출산, 아동보호, 출생직권기록 신고내용을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사항을 인구데이터처로 송부, 이를 토대로 통계작성
- 인구동향조사 조사표는 대법원 가족관계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 가족관계신고서에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반영하고 신고인의 신고를 통해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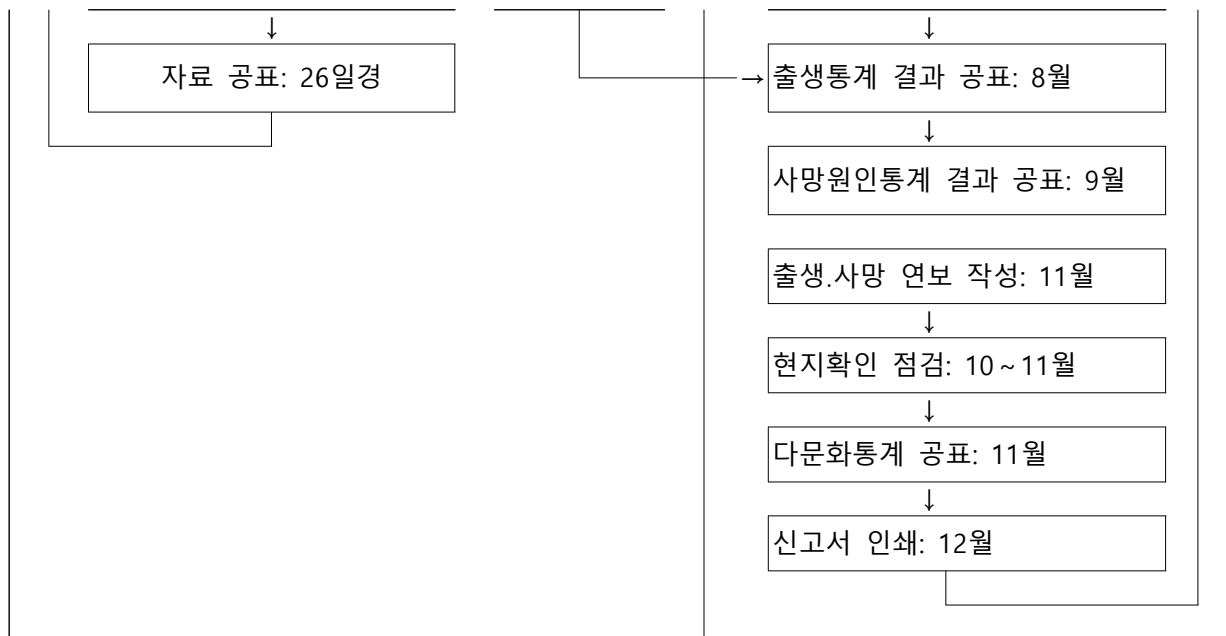
2.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 주기 : 매월
- 공표 주기 : 매월, 분기, 연간

3.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업무별 수행일정





□ 일정별 수행기관

단계	내용	수행기관	일정
실시계획 수립	연간 세부 일정 수립	인구동향과	연초
신고서 입력 및 내검	시구, 읍면동에서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 접수	지자체	연중 계속
	신고서 입력(전월 자료)	지자체	매월 초
	신고서 내용검토 요청사항 수정(전전월 자료)	지자체	매월 초
	입력자료 내용검토 및 지자체 수정요청(전월자료)	인구동향과	매월 말
인구동향(월간, 분기) 보도자료	자료 내용검토(전전월)	인구동향과	매월, 매분기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매월
신고서 배부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 인쇄 및 배부(지자체)	인구동향과	6월, 12월
담당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	인구동향과	3월
	교육실시(지자체 신규담당자 대상)	인구동향과	4~5월
출생·사망(잠정) 보도자료	자료 내용검토(13개월 입력자료)	인구동향과	2월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2월
혼인이혼 보도자료	연간자료 내용검토	인구동향과	2월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3월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혼인이혼 연보작성	인구동향과	4월
현지확인	현지확인 계획수립(품질관리)	인구동향과	9월
	현지확인 수행(해당 지자체 내용검토 사항 확인)	인구동향과	9~10월
	현지확인 결과 수정반영	지자체	10~11월
출생(확정) 보도자료	연간자료 내용검토(16개월 입력자료)	인구동향과	7월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8월
	출생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인구동향과	9월
사망원인 보도자료	연간자료 내용검토	인구동향과	8월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9월
	사망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출생사망 연보작성	인구동향과	11월
다문화 인구동태 보도자료	연간자료 내용검토(국적부분)	인구동향과	10월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인구동향과	11월
	마이크로데이터 이관(국적 부분)	인구동향과	11월

4. 통계연혁

□ 개발배경

- 인구동태통계는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으로 각 국가의 기본통계임
-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가 존재했고 1930년대 이후부터 인구동태통계를 생산, 1970년부터는 인구동태통계를 호적제도와 연계하여 작성
 - UN에서도 각 국가의 기본통계로 인구동태통계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별 신분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도록 권고
- 2011년에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다문화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개발
 - 다문화인구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대한 통계인 “다문화인구동태통계”를 생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년 자료 최초 공표 이후 매년 공표

□ 조사연혁

-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 존재
- 1909년(조선 융희(隆熙) 3년) 민적법, 1912년 조선 민사령 제정공포로 지금과 같은 호적형태로 체계화
- 1937년 조선총독부 총독령 제161호에 의거 조선 인구동태 조사규칙 제정
 - 1937년 10월 27일 공포, 1938년 1월 1일 시행
 - 인구동태통계조사를 법 목적(법적신분관계규정을 목적으로 한 호적)에서 독립시켜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한 획기적 조치로 근대적 의미의 인구동태 통계조사 실시
- 1948~55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호적신고와는 별도의 인구동태조사표 작성
 - 1949년 1월 인구동태조사법, 1949년 12월 인구동태조사령 제정, 인구동태신고제도로 독립
- 1962년 통계법 및 인구동태조사규칙(경제기획원령) 제정 공포
 - 1962년 6월 1일 구 통계법(법률 제980호)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정통계(경제기획원 고시 제3호)로 지정고시
- 1970년 호적신고 항목과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통합 일원화
 - 인구동향조사 조사표와 대법원 호적신고서를 통합하여 동일한 신고서 사용, 조사형식도 대법원 호적신고를 통하여 이뤄지도록 적용
- 1980년부터 인구동태통계연보(1970~1979년간 자료수록) 발간 시작
- 1982년부터 사망원인통계연보 발간 시작
- 1997년 8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 채택

- 1999년부터 인구동태통계 연보를 「총괄·출생·사망편」과 「혼인·이혼편」으로 구분하여 별권으로 발간
- 2004년 1월부터 호적정보시스템과 연계, 웹기반 인구동태입력시스템 전환
- 2007년 12월 인구동태조사규칙(부령 591호) 제정
- 2008년 1월 호적정보시스템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변경, C/S기반 인구동태입력시스템 전환
- 2011년 11월 인구동향조사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작성
- 2014년 5월 인구동태조사규칙을 인구동향조사규칙(부령 425호)으로 개정
- 2016년 1월부터 나라통계 인구동향조사 입력시스템 신규 보급
- 2016년 12월 통계법(법률 제14467호) 일부개정
- 2017년 7월 인구동향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일부개정
- 2018년 1월 1일 인구동향조사 서식 개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12호)
- 2022년 12월 27일 인구동향조사 서식 개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7호)
- 2024년 1월 인구동향조사규칙통계법(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타법개정
- 2024년 3월 통계법(법률 제20408호) 일부개정
- 2025년 2월 차세대 인구동향조사 입력시스템 전환

5. 통계의 작성목적

5-1 통계 작성 목적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
-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5-2 주된 통계활용 분야 파악

☐ 활용분야

- 출생 통계
 -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지원 정책 수립, 출생아수에 비례한 지역별 산부인과 병상수 및 의사 수요예측
 - 출산 동향, 출산력 및 출산장려금 관련 분석, 저출산 관련 연구 등 다양한 특성별 출산율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
- 사망 통계
 -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기초자료, 보건 및 질병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다양한 특성별 사망자분석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

- 영아사망률, 노인통계, 출생-사망 추이분석, 사망원인분석 등 학술연구에 활용
- 혼인 및 이혼통계
 - 장래인구 추계 시 출산력 가정의 기초자료, 장래가구 추계의 기초자료, 혼인에 따른 주택 기타 혼인용품 수요 예측, 인구정책·가족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과 개발
 - 혼인·이혼 동향 파악, 혼인형태 변화 연구, 다문화 및 이민정책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특성별 혼인·이혼 행태분석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
- 언론보도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시계열 비교, 혼인·이혼 동향, 지역별 및 연령별 인구동태 관련 언론보도에 활용
- 국제비교 자료
 - UN, OECD, WHO 등 국제기구에서의 국가 간 인구현황과 변동요인 등에 대한 비교 자료로 활용

6. 유형별 주요 이용자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정부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결혼과 일가정병행정책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수립·평가, 지자체별 출산지원과 주택수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평가 등 정책수립과 정책효과 분석 등에 통계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 인구, 보건 분야 등
 - 출산력 분석,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과 혼인 등의 상관관계 분석, 우리나라 향후 인구구조 변동 분석 등 연구자료로 활용
- (국제기구) UN, OECD, WHO 등에서 국가간 인구추이와 변동요인 분석과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II. 통계설계

1. 조사항목

1-1 조사항목의 체계 및 조사목적

☐ 조사항목 체계

구분		주요 항목
출생	출생자	성명, 성별, 혼인중외 출생 여부,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신주수, 체중,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출생자 부모	부모 주민등록번호, 부모 등록기준지, 부모 국적, 생년월일, 최종졸업학교,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모의 총출산아수
	신고인	신고인 성명, 자격
혼인	남편과 아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제결혼생활시작일, 국적, 혼인종류, 최종졸업학교, 직업
이혼	남편과 아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제결혼생활시작일, 실제이혼연월일, 19세미만 자녀수, 이혼종류, 국적, 최종졸업학교, 직업
사망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국적, 졸업학교, 직업, 혼인상태
	사망원인	사망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사망종류, 사고종류,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고장소
	신고인	신고인 성명, 자격(관계, 자격)

☐ 조사항목별 조사목적

구분	항목		활용 내용
출생	출생자	임신 주수, 체중	임신 주수별 및 체중별 출생아수 공표 (출생아 보건, 미숙아 의료체계(산부인과) 구축을 위한 통계 등)
		다태아 여부 및 출산순위	다태아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공표 (다태아 출산 추이 파악)
		성별	성별 출생아수 공표
		혼인 중 출생 여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아수 공표 (혼인외자의 추이를 통한 관련 제도와 출생관계 등 검토)
		출생일시	월별 출생아수 공표
		출생장소	출생장소별 출생아수 공표(보건현황)
		주소	주소(지역별) 출생아수 공표 (지자체별 출산지원정책)
	부모	국적 및 등록기준지	다문화출생 및 국적별 출생아수 공표 -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 구분
		생년월일	부모 연령별 출생아수 공표 (출산패턴 변화)
		최종 졸업학교 및 직업	부모 사회적 지위와 환경에 따른 출산패턴 변화

구분	항목		활용 내용
		실제 결혼생활시작일	동거기간별 출생아수와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추이 분석
		총출생아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공표
사망	사망자	주소	주소(지역별) 사망자수 공표
		국적	다문화사망 및 국적별 사망자수 공표
		최종 졸업학교	교육정도별 사망자수 공표
		발병 당시 직업	직업별 사망자수 공표
		혼인상태	혼인상태별 사망자수 공표
	사망원인	사망일시	월별 사망자수 공표
		사망장소	사망장소별 사망자수 공표
		사망원인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공표
혼인	실제 결혼생활시작일		발생월별 혼인건수
	남편, 아내	국적 및 등록기준지	다문화혼인 및 국적별 혼인건수 공표 -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 구분
		혼인종류	혼인종류별 혼인건수 공표
		최종 졸업학교	교육정도별 혼인건수 공표
		직업	직업별 혼인건수 공표
		주소	주소(지역별) 혼인건수 공표
이혼	실제 결혼생활시작일, 실제 이혼연월일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공표
	19세 미만 자녀수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공표
	이혼 종류		이혼 종류별 이혼건수 공표
	남편, 아내	국적 및 등록기준지	다문화이혼 및 국적별 이혼건수 공표 -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 구분
		최종 졸업학교	교육정도별 이혼건수 공표
		직업	직업별 이혼건수 공표
		주소	주소(지역별) 이혼건수 공표

1-2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주요 개념

○ 출생(Live Birth)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사망(Death)

- 출생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 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 상태

○ 혼인(Marriage)

-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법적관계로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이혼(Divorce)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 및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조사항목별 정의

가. 출생

- (1) 출생자 주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 예정지를 말함
- (2) 부모의 생년월일
 - 사실상 연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상의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출생자 부모가 실제로 태어난 양력일자를 말하며, 음력인 경우는 양력으로 환산
- (3) 부모의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용)
 - 출생자가 태어난 당시의 부모 직업을 말함

부 호	항 목 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3	학생·가사·무직
99	미상, 군인

- (4)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출생당시 졸업을 기준으로 함

구 분	기 준
무 학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거나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대학(교)	대학(교)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대학원 이상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 (5) 부모의 실제결혼연월일

- 부모가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짜를 말하며 결혼식 날짜 또는 혼인신고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님

(6) 임신주수

- 임신주수는 임신한 후부터 출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7) 다태아 여부

- 태아수는 모가 이번 출산에서 몇 명의 아기를 출산하였는지를 의미
 - 단태아는 한번에 1명의 아기를 출산한 경우이고, 쌍태아는 쌍둥이, 삼태아 이상은 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때 해당

(8) 신생아 체중

-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신생아 체중을 말함

(9) 모의 총출산아수

- 모의 출산순위별 출산율·출생성비 등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모가 현재까지 낳은 총 출생아수 즉, 출산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가족관계등록 내용과는 상관없이 출생신고하려는 출생자를 포함하여 모가 현재까지 출산한 아이의 총수를 의미
 - 현재까지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가 각각 몇 명인가를 말함
 - 모가 재혼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포함하며,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와 입양자 제외

나. 사망

(1) 사망자 주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함

(2) 사망자 사망일시

- 사망자가 실제로 사망한 날짜를 말하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록된 날짜와 동일함

(3) 발병(사고발생)당시 직업

- 15세 이상 사망자만 해당되며,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병이 발생한 시점의 사망자 직업을 말하고, 만약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고발생 당시의 직업을 말함

(4) 사망원인 진단자

- 사망원인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작성자 등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판단한 자를 말함

(5) 혼인상태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실제혼인상태를 말함

(6)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사망당시 졸업을 기준으로 함

(7) 사망원인

- 사망원인란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 「(가): 직접사인」이란 직접 죽음의 원인이 된 합병증·질병과 손상을 말하며,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은 각각 위의 원인이면서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기재하고 원사인은 최하단에 기재함

(8) 의도성 여부

- 의도성 여부란은 2009년 4월에 의료법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된 항목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비의도적 사고」란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경우를 의미하고, 「타살」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함

다. 혼인

(1) 실제 결혼연월일

-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생활(동거)을 시작한 날을 말함

(2)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용)

- 혼인 당시의 직업을 말함
 - 다만,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의 내용을 말함

(3)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4) 혼인종류

- 혼인 당시 혼인종류(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말함

라. 이혼

(1) 실제 결혼연월일

-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생활(동거)을 시작한 날짜를 말함

(2) 실제 이혼연월일

- 법원의 재판확정일자와는 상관없이 이혼당사자가 사실상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말함

(3)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4)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용)

- 이혼 당시의 직업을 말함

1-3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국제기준 (UN 인구동태작성 권고안 참조)

- 인구동향조사 :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인구동태통계 :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 즉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인구의 구조나 성장에 의미있게 발생하는 사건을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집계한 것
- 조출생율 :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 기준 일정 기간 중 특정 인구에 발생하는 출생 건수를 토대로 하는 인구동태통계 요약률. 즉,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의 인구에서 발생한 동년 해당 지역 연중 총 인구 1,000명 당 출생 건수
- 조사망률 :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 기준 일정 기간 중 특정 인구에 발생하는 사망 건수를 토대로 하는 인구동태통계 요약률. 즉,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의 인구에서 발생한 동년 해당 지역 연중 총 인구 1,000명 당 사망 건수
- 조이혼율 :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 기준 일정 기간 중 특정 인구에 발생하는 이혼 건수를 토대로 하는 인구동태통계 요약률. 즉,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의 인구에서 발생한 동년 해당 지역 연중 총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
- 조혼인율 :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 기준 일정 기간 중 특정 인구에 발생하는 혼인 건수를 토대로 하는 인구동태통계 요약률. 즉,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의 인구에서 발생한 동년 해당 지역 연중 총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
- 출생 :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임신 부산물과 산모의 완전한 방출 내지 배출, 그리고 분리 후 호흡이나 심장 박동, 탯줄 절단 여부나 태반 점착 여부에 관계없이 탯줄 맥동, 뚜렷한 수의근 운동 등 생명의 증거가 보일 경우, 이러한 출산에 따른 산물
- 사망 : 출생의 발생 이후 특정 이점에서의 영구적인 생명 징후 소멸. 즉, 출생 후 소생 기능 없는 생체 기능의 완전 정지. 영아 사망은 이 정의에서 제외
- 혼인 : 법적 배우자 관계가 형성되는 행위, 예식, 또는 절차. 결합의 합법성은 각 국가의 법으로 인정되는 민법, 종교,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성립된다. 국가에 따라 이 정의를 확대하여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혼까지 포함시키려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등록된 부부 관계는 통상 각국의 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 등록된 두 사람 간의 법적 부부 의무로 이어지는 법적 구성체를 지칭
- 이혼 : 배우자의 분리와 함께 각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법, 종교 및/또는 기타 조항에 입각한 재혼 권리가 부여되는 법적 혼인 관계의 최종 청산. 국가가 등록 파트너십을 인정할 경우, 등록된 파트너십의 법적 청산도 국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파트너십의 법적 최종 청산에 해당하며,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거나 재혼할 권리가 부
- 인구동태 사건 : 출생, 사망, 태아사망(사산), 혼인, 이혼, 입양, 입적, 양육권

인정, 혼인무효(취소) 또는 법적 별거의 발생

- 등록 기반 인구동태통계의 적시성 :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된 모든 사건마다 통계 보고서 양식이 정해진 인구동태통계 프로그램 일정 내에 인구동태통계 담당 기관에게 전달되고, 해당 인구동태통계의 생성, 공표 및 유포가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품질

2. 적용 분류체계

☐ 조사항목별 분류체계

구분		주요 항목	분류 체계
출생	출생자	성별	남아와 여아 구분 (출생성비)
		혼인중외	부모의 법률혼인상태 구분 (혼인 중/혼인 외)
		주소	행정동 기준으로 읍면동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출생장소	병원(조산원 등 의료기관 포함), 자택, 기타(운송수단이나 공공건물 등을 포함)
		임신주수	주 단위와 일 단위로 파악(출생증명서)
		체중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파악(출생증명서)
		다태아 여부	단태아와 쌍태아 이상 다태아로 구분
	출생자 부모	등록기준지	국내 등록기준지 시도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국적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방법 기준 적용 (출생시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 외국인)
		졸업학교	6개 분류 적용(졸업기준) *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혼인	남편 아내	직업	11개 직업분류 적용(※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개 대분류에 학생·가사·무직 추가)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학생·가사·무직/군인(사병제외)
		등록기준지	국내 등록기준지 시도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주소	행정동 기준으로 읍면동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구분		주요 항목	분류 체계
		국적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방법 기준 적용 (출생시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 외국인)
		혼인종류	남편과 아내 각각 초혼, 이혼후 재혼, 사별후 재혼
		졸업학교	6개 분류 적용(졸업기준)
		직업	11개 직업분류 적용(※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개 대분류에 학생·가사·무직 추가)
이혼	남편 아내	등록기준지	국내 등록기준지 시도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주소	행정동 기준으로 읍면동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19세미만 자녀수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기준으로 연령 적용
		이혼종류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구분
		국적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방법 기준 적용 (출생시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 외국인)
		졸업학교	6개 분류 적용(졸업기준)
		직업	11개 직업분류 적용(※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개 대분류에 학생·가사·무직 추가)
사망	사망자	주소	행정동 기준으로 읍면동단위까지 작성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국가명으로 집계)
		사망장소	10개 분류 적용 * 주택내/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공공시설/도로/상업·서비스시설/산업장/농장/병원 이송 중 사망/기타
		국적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방법 기준 적용 (출생시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 외국인)
		졸업학교	6개 분류 적용(졸업기준)
		직업	11개 직업분류 적용(※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개 대분류에 학생·가사·무직 추가)
		혼인상태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상태 기준 * 미혼/배우자있음/이혼/사별
	사망원인	사망원인	국제사인분류(ICD10) 적용

3.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조사표 변경 사항

구분	항 목 변 경 내 역
출 생	- 임신월수, 신생아 체중 추가 : 1993 - 중고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 : 1993 - 조산자 항목 삭제 : 1995 - 다태아 중 출산순위 란 추가 : 2000 - 부모의 국적항목 추가 : 2009 - 국적항목(귀화, 인지 포함) 및 직업항목(주관식) 변경 : 2012 - 신고서 간소화로 일부항목 출생증명서로 대체(직업, 임신주수 등) : 2018
사 망	- 사망의 종류 추가, 사망원인 세분(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등) : 1979 -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미상 중 기타 및 미상 삭제 : 1990 -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추가 : 1993 - 중고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 : 1993 - 발병에서 사망까지 기간 추가 : 1998 - 사망발생장소, 사고내용 추가 : 2000 - 사망자의 국적항목 추가 : 2009 - 외인사 사항에 사고일시, 의도성 여부 추가 : 2009 - 국적항목(귀화, 인지 포함) 및 직업항목(주관식) 변경 : 2012 - 신고서 간소화로 일부항목 사망증명서로 대체(직업 등) : 2018
혼 인	- 혼인종류(초혼, 재혼) 추가 : 1971 - 재혼을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2개항목으로 분리 : 1993 - 중고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 : 1993 - 성혼과정, 혼인장소 항목 삭제 : 1995 - 혼인 당사자의 국적항목 추가 : 2009 - 국적항목(귀화, 인지 포함) 및 직업항목(주관식) 변경 : 2012 - 신고서 간소화로 직전혼인해소일자 삭제 : 2018
이 혼	- 20세미만 자녀수, 이혼종류(협의, 재판) 추가 : 1993 - 중고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 : 1993 - 이혼사유 중 부부불화를 성격차이,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3개 항목으로 분리 : 2000 - 이혼당사자의 국적항목 추가 : 2009 - 국적항목(귀화, 인지 포함) 및 직업항목(주관식) 변경 : 2012 - 미성년(20세→19세) 자녀수 변경 : 2012 - 신고서 간소화로 이혼사유 삭제 : 2018

4. 조사표 설계 및 구성

□ 조사표 첨부

○ 출생신고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 남 ☐ 여	* ☐ 혼인 중의 출생자 * ☐ 혼인 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 연월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 장소		☐ 자택 ☐ 병원 ☐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기타 사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부 ☐ 모 ☐ 동거친족 ☐ 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㉗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인)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 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경”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⑤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⑥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 제19호]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성 방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 등목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 장소 구분: ①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⑩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 고 인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 출 인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⑤ 최 종 졸업학교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 혼인 당사자 (신고인)	성명	한글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 (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⑤ 근친혼 여부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요 ☐							
⑥ 기타 사항									
⑦ 증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⑧ 동의자	남편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후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⑨ 신고인 출석 여부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⑩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 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년 월 일부터 동거		
⑭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⑮ 혼인 종류	남편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아내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⑯ 최종 출업학교	남편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아내 (처)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남편 (부)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가사·무직	아내 (처)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가사·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④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⑤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⑩란: 결혼일자과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⑪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1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⑫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11 판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1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1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1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1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16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1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2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 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21 학생·가사주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① 일반적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편(부)								아내(처)									
① 이혼당사자 (신고인)	성명	한글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 (양부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 기타 사항																			
④ 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③부모						③부모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②모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③부모						③부모											
⑥ 신고인 출석 여부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⑦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⑭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⑮ 19세 미만 자녀 수		명		
⑭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⑯ 최종 출업학교	남편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아내 (처)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⑯ 직업	남편 (부)	① 관리직	② 전문직					아내 (처)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가사·무직						⑪ 학생·가사·무직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원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1** 합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2**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㉑란, ㉒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㉓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1**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㉔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9** 단순노동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1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 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11** 학생·가사주최: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본 1부.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부를 생략합니다.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합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신분 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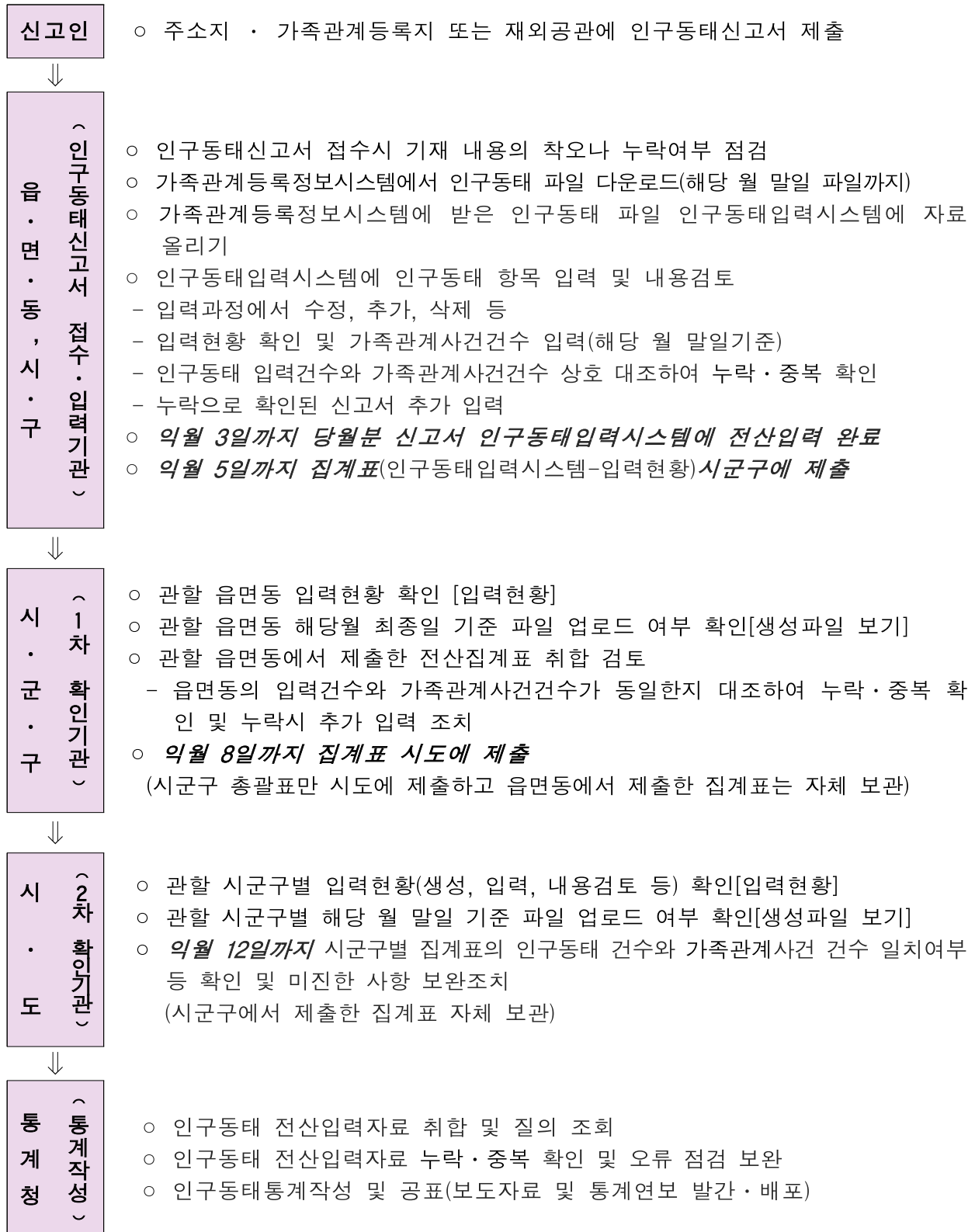
<신고종류별 신고방법>

구 분	출 생 신 고	사 망 신 고	혼 인 신 고	이 혼 신 고
신고근거 ¹⁾	제20조, 제21조, 제44조~제51조	제20조, 제21조, 제84조~제91조	제20조, 제71조~제73조	제20조, 제74조~제78조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정해진 기간 없음 단, 재판에 의한 혼인인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명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재판에 의한 혼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상 이혼: 확인서등본 ·재판이혼: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의무자	부모	동거하는 친족	당사자	당사자
신고장소	출생자의 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관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관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업무 흐름도



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공통사항 입력 요령

① 주소(행정동) ※ 인구동태통계의 지역분류 기준이 행정동 기준임 (반드시 입력)

- 신고서에서의 주소를 행정동으로 검색하여 입력
- 거주지(주소)가 외국인 경우 : 국가명을 입력

주소란의 **주소변경** 버튼을 클릭한 후, 주소 찾기 화면에서 국가명으로 검색하여 선택

② 최종졸업학교

- 사건 발생 당시 정규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기준

구 분	기 준
무 학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거나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대학(교)	대학(교)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한 경우
대학원 이상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 출생신고서 입력 요령

① 혼인상태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 :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② 출생일자

- 첨부서류인 출생증명서의 출생일자와 일치여부를 확인

③ 출생장소

- 자택 : 자기 집 뿐만 아니라 친정집, 친척집 등 집(주택)에서 출생한 경우
- 병원 :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조산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 기타 : 자택과 병원을 제외한 장소로 버스, 승용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이나 공공건물 등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

④ 출생자 주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예정)지를 입력하며, 외국 거주자는 **주소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를 검색 후 선택(출산 병원 주소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주소 및 상세주소 변경 시에는 **주소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행정동을 검색 후 주소를 수정하여 입력

⑤ 임신주(週)수

- 임신기간을 주(週)와 일(日)단위로 파악하는 항목으로 임신 후 만(滿) 몇 주 며칠이 되었는지를 입력, 출생증명서의 임신주수와 일치
 - (예시) 39주 7일 → 40주로 입력 (7일은 1주로 전환)

⑥ 신생아 체중

- 출생 당시 체중(kg)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입력. 출생증명서의 체중과 일치
 - (예시) 3,675 g → 3.675 Kg (○), 3.68 Kg (×): 반올림하지 말고 출생증명서상 몸무게 그대로 기재

⑦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 출생자의 모(母)가 신고서 상의 출생자 출산 시 쌍둥이(이상)를 출산하였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며,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아이가 다태아(쌍둥이 이상) 중 몇 번째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파악
- 산모가 이번 출산에서 두 번째 아이를 단태아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반드시 단태아로 표시되어야 하며 쌍태아로 선택해서는 안 됨

⑧ 국적

- 출생자 부·모의 해당 국적을 입력하며 ②대한민국(귀화, 인지 국적취득)과 ③외국은 **국적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명을 검색 후 선택

⑨ 출생자 부모의 생년월일

- 출생자 부모의 주민등록 생년월일

⑩ 모의 총 출산아 수

- 신고서 상의 출생자를 포함하여 모(母)가 지금까지(재혼여부는 관계없음)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중 몇 명이 생존했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자의 모(母)의 이전 혼인에서의 출생자 수는 포함하고, 현재 재혼한 남편의 전처의 아이는 제외

□ 사망신고서 입력 요령

① 사망일시

- 첨부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의 사망일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입력
- 사망시간은 24시각제로 입력하고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는 현지 시각을 입력
- 사망신고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도 사망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② 사망장소

- ① 주택 내 :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마당, 정원, 차고 등) 포함
- ② 의료기관 :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
- ③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고아원, 호스피스, 요양소, 교도소, 기숙사 등
- ④ 공공시설 : 학교, 운동장,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교회 등
- ⑤ 도로 : 보도, 인도, 자동차도로, 자전거 도로 등
- ⑥ 상업·서비스시설 : 상점, 호텔 등
- ⑦ 산업장 : 공장, 건설중인 건물, 광산, 부두 등
- ⑧ 농장 : 논밭, 축사, 양식장, 방목장 등
- ⑨ 병원 이송 중 사망 :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 사망
- ⑩ 기타 : 위의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 사망한 경우(강, 공원, 산, 저수지, 주차장, 철로 등)

③ 사망종류

- 사망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해당되는 것을 선택
- ① 병사 : 각종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로, 노환이나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
- ② 외인사(사고사 등) : 죽음이 외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이 가해져 사망한 경우이다. 질병 이외의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로 각종 사고사가 포함된다. 외인사의 경우에는 '사고종류'와 '의도성여부' 등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상의 외인사의 추가사항을 반드시 입력
 - (예시) 병원에 입원 중 사망 또는 응급실 진료중 사망일 경우 사고발생장소는 '의료기관'
- ③ 기타 및 불상 : 병사인지 사고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행려병자의 사망 등)

④ 사고종류 : 외인사(사고사 등)인 경우만 해당

- ① 운수(교통) : 비행기, 화물차,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탑승한 채 보행자가 운송수단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 ② 중독 : 살충제(농약 등), 의약품, 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
- ③ 추락 :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
- ④ 익사 : 물놀이를 하는 도중 사망하거나, 물속으로 떨어져 사망
- ⑤ 화재 : 가스폭발, 불장난 등 화재로 사망한 경우
- ⑥ 기타 : 사고사인데 위의 항목에 없는 경우(홍수,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 포함)

⑤ 사고사의 발생장소

- 운수(교통), 중독, 추락, 익사, 화재 등이 발생한 장소를 선택. 단,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망한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선택.
- (예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공로에서 사망한 경우 사고발생장소는 '산업장'

⑥ 의도성 여부 : 외인사(사고사 등)인 경우에만 해당

- ① 비의도적 사고 : 실수로 발을 헛디뎈 계단에서 떨어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물놀이 중 익사 등
- ② 자살 :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음
- ③ 타살 : 남에게 죽임을 당함

⑦ 사망원인

-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중간에 빈줄이 있으면 비워두고, 다음에 기재된 내용부터 빠짐없이 그대로 입력)
- (예시) 의사(목매어 사망) → 익사(×)

⑧ 발병(사고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

- 이 항목은 '사망원인' 란이 인과관계에 맞게 기술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사고사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그 후유증에 의한 사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재된 신고서의 경우 ㉠의 란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오래된 시점의 질병이나 상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간으로 기재(예:1년 전, 6개월 전)하거나, 발병이나 사고발생시점(예: 2019. 1. 20.)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9 기타 신체사항

-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질병이나 손상을 기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입력

☐ 10 사망원인 진단자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판단한 자
 - ① 의사: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 ②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 ③ 기타: 조산사, 간호사, 사망자의 가족, 친척 등과, '의사',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

☐ 12 혼인상태

- 가족관계등록부와는 관계없이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사실상 어떠한 혼인상태에 있었는가에 따라 선택
 - ① 미혼: 한 번도 혼인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
 - ② 배우자있음: 초혼 또는 재혼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실혼관계인 경우
 - ③ 이혼: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독신으로 있었던 사람(별거상태 포함)
 - ④ 사별: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한 쪽이 먼저 사망하여 독신으로 있었던 사람(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포함)

* 무응답 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상태 입력

☐ 혼인신고서 입력 요령

☐ 1 실제결혼생활시작일

- 실제 결혼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도 실제결혼년월일을 입력

☐ 2 혼인종류

- 혼인신고 시점의 혼인종류를 구분하는 항목

구 분	기 준
초 혼	첫 번째 결혼을 한 경우
사별 후 재혼	이번 혼인신고 직전 혼인이 배우자가 죽었거나 실종되어 종료된 경우
이혼 후 재혼	이번 혼인신고 직전 혼인이 배우자와 이혼(혼인취소 포함)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

☐ 3 직업

- 혼인할 당시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직업과 최종 졸업학교, 연령을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주의

□ 이혼신고서 입력 요령

① 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 혼인과 이혼이 반복된 경우 초혼일자를 입력해서는 안되며, 이혼당사자와의 최종재혼 일자를 입력. 특히, 동일인과의 혼인, 이혼이 반복된 경우 주의

② 실제이혼연월일

- 이혼재판 확정일자 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자 등과 상관없이 이혼당사자가 사실상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서로 헤어진 날(양력)을 입력

③ 19세 미만 자녀 수

- 이혼 당시 만 19세 미만 자녀수만을 입력하는 항목. 신고서의 '친권자지정'항목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수에 인원이 동일하게 입력
-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총 자녀수를 '19세 미만 자녀수'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고서 접수 시 이혼 당사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반드시 확인

④ 이혼 종류

- 자동으로 입력되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분류

구 분	기 준
협의상 이혼	이혼당사자가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이혼당사자가 서로 원만히 이혼조건을 합의)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의해 이혼 조건 및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등이 정해진 경우

⑤ 직업

- 이혼할 당시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직업과 최종 졸업학교, 연령을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주의

4. 조사(또는 응답) 대상

4-1 적격 조사(또는 응답) 대상의 지정 이유

□ 가족관계등록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격 응답자 지정

- 조사의 효율성과 응답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의무자와 적격 응답자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적격 응답자	부모	동거하는 친족	당사자	당사자

□ 대리응답 허용여부와 허용하는 경우 이유

-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대리응답자를 지정하여 신고가 가능,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률에서 대리응답자를 법률로 지정하고 있음

4-2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 결과

□ 응답자의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 결과

-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기억응답을 의존해야 하는 경우, 혼인신고날짜 등과 시점을 대조하고 출산과 이혼까지의 기간 등을 비교하여 날짜의 적절성을 검토

5. 무응답 대처

- 인구동향조사는 출생·사망·혼인·이혼에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형식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고 그 자료를 입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응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일부 항목(예: 학력 등)에 대한 불응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재차 질의하고 계속 불응하면 ‘미상’ 처리하고 있음
- 행정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활용

6. 행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

6-1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

- 인구동태통계의 정확성 검증과 다문화인구동태통계를 분석가능한 기준에 맞게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수집

6-2 행정자료 목록 및 활용 현황 파악

- (행정자료 대체)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에서 ①외국인 사망자, ②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있는 한국인 사망자 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입수·활용
- (다른 통계조사 자료 대체) 영아사망 중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 “영아사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출생아수에 포함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의 “사망원인보완조사”를 통하여 각 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하여 영아사망자료를 입수, 해당 자료와 출생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출생아로 포함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조사결과 자료의 부호화 방법

- 각 항목마다 입력 즉시 코딩 처리하여 저장
 - 객관형에서는 객관형 번호대로 코딩
 - 주소는 행정구역 코드번호 적용, 기타 모든 항목(성별, 혼인종류, 혼인중외여부 등)에서는 구분값에 따른 코딩 적용
 - 연속형 응답에서는 각 응답사항을 적용하여 코딩
 - 미상과 기타 등을 구별하여 별도 코드 부여

☐ 코드체계

- 코드는 값의 크기에 따라 한자리에서 세자리 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래값을 그대로 사용

☐ 패쇄형 응답

- 응답이 한정적인 명목형 항목에 사용(예 성별 등)

☐ 개방형 응답

- 성명, 주소 등 범주화가 어려운 대부분의 항목에 사용
- 몸무게 등 연속형 변수는 원래값을 그대로 사용

2. 자료입력

☐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 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토방법 교육

- 인구동향조사 입력시스템을 통한 자료입력 방법과 내검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규 담당자 대상 교육을 2회 실시

☐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 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등 지침서 제작

- 입력시스템 입력 방법 등에 대한 지침서를 매년 제작하여 담당자별 배부

☐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사이버강의 개발 및 매월 교육 실시

- 입력시스템 입력 방법 등에 대한 사이버강의 개발하여 보급(통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포함)
 - 신규 담당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력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강의 실시

☐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며 인구동태시스템에 일부항목만 추가로 입력

3. 자료내검

☐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 자료 내검 방법

- 입력시스템에서 입력 즉시 전산내검을 통한 기본 내검 실시
 - 인구동향조사 지침서에 자료입력 및 내용확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 본부에서 전체 자료를 다시 내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 재내검 요청 (월간과 연간 단위로 자료에 대한 내검을 실시하여 적용)
 - 전산 내검 후 담당자가 SAS나 Sql을 이용하여 항목내검 및 항목별 연관관계에 대한 논리 내검 실시, 내검 후 지자체에 전산을 통하여 내검확인 및 수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보완

4.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 무응답

- 응답자가 응답거부하는 경우와 실제적으로 정보가 없는 경우로 구분됨
 - (응답거부) 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에서 응답거부 발생
 - (정보없음) 혼인외자의 경우 부의 개인정보를 없을 수 있으며, 출생아 체중과 임신주수 등도 병원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가 없을 수 있음

☐ 항목 무응답률 산출식

- 일반사항
 - 신고된 인구동태 사건을 분모로 항목 무응답 비율 산출
- 산출식

$$\text{항목 무응답률(\%)} = \frac{\sum \text{항목 무응답 건수}}{\sum \text{전체 신고건수}}$$

☐ 항목무응답 분포와 특징,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 인구동향조사는 신고하는 모든 대상에게 질의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전수조사이나, 신고서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무응답을 줄이기 위해 누락 항목이 있을 경우 최대한 민원인에게 재질의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독려함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1-1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

☐ 공표되는 내용과 세분화 수준

- 주요 통계표에 대하여 연령은 각세 및 5세 구간별, 지역은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표 모두에서 성별 구분 통계 제공

통계목록		세부 통계표
총괄	월·연간 인구동향	월·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인구동태건수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읍면동,성별/출생·사망,혼인,이혼건수
출생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출생아수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시군구/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출산순위별 출생	성/모의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모의 평균 출산연령 및 연령별 출생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 출생
	교육정도별 출생	시도/모의 연령(5세계급)/모의 교육정도별 출생
		시도/부의 연령(5세계급)/부의 교육정도별 출생
	동거기간별 출생	시도/모의 연령/동거기간별 출생
		시도/모의연령/동거기간별 출생(쌍태아이상)
	출생시 체중별 출생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생시 체중별 출생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생시 체중별 출생(쌍태아 이상)
		시도/성/출산순위/출생시 체중별 출생
		시도/성/출산순위/출생시 체중별 출생(쌍태아 이상)
	출산순위별 출산연령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시도/출산순위별 출생 성비
		시도/출산순위별 출생(쌍태아이상)
	임신기간별 출생	시도/임신기간별 출생
		시도/임신기간별 출생(쌍태아이상)
	출생장소 및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시도/출생장소별 출생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쌍태아 및 월별 출생	시도/쌍태아, 성별 출생
		시군구/성/월별 출생
사망	사망	성/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
		성/연령/혼인상태별 사망자수
		성/연령/교육정도별 사망자수
		성/연령/직업별 사망자수

통계목록		세부 통계표
		시도/성/연령별 사망자수
		시도/성/연령별 사망률
		시군구/월별 사망자수
		시군구/성/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
혼인	연령별 혼인	시도/일반혼인율
		시도/성/연령별 혼인율
		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
		시도/연령별 혼인
	혼인종류별 혼인 및 혼인연령별 혼인	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
		시도/시군구별 혼인종류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시도/시군구별 평균초혼연령
		시도별 평균재혼 연령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
		시도/초혼연령별 혼인
		시도/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시도/재혼연령별 혼인
		시도/사별후 재혼연령별 혼인
		시도/이혼후 재혼연령별 혼인
		시도/재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직업별 혼인 및 교육정도별 혼인	시도/직업별(2008-) 혼인
		연령/교육정도별 혼인
		연령/교육정도별 혼인(초혼)
		연령/교육정도별 혼인(재혼)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인남편의 혼인 종류/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
		한국인아내의 혼인 종류/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
		시도/시군구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
		시도/시군구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
		농림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시도/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발생기준 혼인	시도/시군구/발생월별 혼인
이혼	연령별 이혼	시도/일반이혼율
		시도/성/연령별 이혼율
		이혼부부의 연령별 이혼
		시도/연령별 이혼
		시도/평균 이혼 연령
	이혼종류별, 동거기간 및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연령별/이혼종류별 이혼
		시도/이혼종류별 이혼
		연령/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
		시도/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
		연령/미성년자녀수별 이혼
		시도/미성년자녀수별 이혼
	직업별 이혼 및 교육정도별 이혼	시도/직업별(2008-) 이혼
		연령/교육정도별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시도/시군구/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통계목록		세부 통계표
		시도/시군구/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이혼
		연령/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연령/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이혼
		미성년자녀수/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미성년자녀수/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이혼
		이혼종류별 외국인과의 이혼
	발생기준 이혼	시도/시군구/발생월별 이혼

1-2 통계 공표범위의 적정성

- 전수조사 결과로 내용확인을 거쳐 작성된 통계로 적정함

1-3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출생 및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만 집계, 연간 신고분을 반영하여 출생아수, 사망자수 및 동태율 보정
 - 국외는 주소지가 외국(일본, 중국, 미국 등)인 경우로, 출생지와 관련이 없음.
- 출생·사망통계는 발생 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혼인·이혼통계는 신고 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수록
 - 출생·사망 신고를 발생 당해 연도에 하지 않은 지연신고분은 이듬해 4월까지 신고한 것을 발생 연도에 포함
- 각 표는 해당연도말(12월 31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1월~12월) 자료를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지역 기준(12월 31일)으로 재분류하여 집계
- 주요 인구지표 산출
 - ◆ 출생·사망건수
 - 1970~2007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연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2008~2024년
 - 해당 연도와 익년도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익년도 5월 이후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은 10년 주기로 시계열 정비시 반영
 - ◆ 혼인·이혼건수
 - 1970~1980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에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연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1981~2024년
 - 해당연도에 접수한 신고서를 신고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따라서 이전연도 발생 분은 포함되고, 지연 신고되는 해당연도 자료는 집계에서 제외됨
- 모든 통계자료에서의 율은 인구단위로 인구1명당 명 개념으로 적용, 필요시 인구 1천명당 명으로 조정하여 공표함
- ◆ 지표산출을 위한 연앙인구
 - 1970~1992년
 -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한 장래추계인구(1996.12.)의 각 연도별 추계인구 이용
 - 1993~2024년
 -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작성된 주민등록연앙인구 이용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시점

□ 조사대상 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 대상기간 : 연간 출생, 사망 발생 및 혼인, 이혼 신고 현황
- 조사 실시기간 : 매월 (연중)
- 공표시기
 - 월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 매월말
 - 연간 출생 : (잠정)다음해 2월말, (확정) 다음연도 8월말
 - 연간 사망 : (잠정)다음해 2월말, (확정) 다음연도 9월말(사망원인통계로 공표)
 - 연간 혼인, 이혼 : 다음연도 3월말

2-2 통계작성 및 공표 기간 단축 가능성

- 출생,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일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신고 일정을 반영한 가장 빠른 기간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사건 발생 이후 1달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월간자료는 당월과 다음달 신고 분까지가 접수완료되는 그 다음달 초에 자료가 최종 입수됨
- 현재는 최종 입수된 자료에 대한 내용확인 후 그 다음달 말에 속보형태로 공표

3. 공표일정

3-1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공표시기: 매월 말(인구동향), 매년 2월(출생·사망(잠정)), 3월(혼인·이혼), 8월(출생), 9월(사망)
- 공표방법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새소식 > 보도자료 > 인구·가구 > 인구동향조사

- KOSIS(<http://kosis.kr>):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인구동향조사

3-2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예고

- 사전 공표일정 안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보도계획에 사전 공표일정 게시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새소식 > 보도계획
- * 통계공표 계획수립 절차와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 대변인실의 보도작성 지침을 준수

3-3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 사전에 예고된 공표일정에 맞게 공표하고 있음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4-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통계작성 방법의 비교성을 위한 통계 개념

- 집계기준
 - 출생·사망: 발생일 기준(16개월 집계방식)
 - 혼인·이혼: 신고일 기준

4-2 분류체계 동일 여부

☐ 통계 분류기준 변경 (시계열 정비)

◆ 출생·사망건수

- 1970~2007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년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2008~2024년
 - 해당 연도와 익년도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익년도 5월 이후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은 10년 주기로 시계열 정비시 반영

◆ 혼인·이혼건수

- 1970~1980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에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년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1981~2024년
 - 해당연도에 접수한 신고서를 신고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따라서 이전연도 발생 분은 포함되고, 지연 신고되는 해당연도 자료는 집계에서 제외

4-3 조사 기준시점 동일 여부

☐ 통계 조사시기 보완 변경 (시계열 정비, 2018년)

- 인구동태신고는 신고자료의 속성으로 인해 지연신고분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지연신고분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추가하여 반영
- 일반적인 통계조사와는 달리 조사시기 및 조사기준시점이 정해져있는 정태통계가 아닌 동태통계임. 또한 통계의 단위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은 법률적 개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4-4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여부

☐ 조사 실시시기: 연중 계속(접수방식)

5. 시계열 비교성

☐ 10년 주기로 시계열 정비 실시

- 지연신고분에 대한 반영을 위하여 10년 기준으로 시계열 정비를 실시
 - 10년간 누적된 신고서(16개월 주기 이후에 신고된 건수)에 대하여 10년 누적자료를 추가하여 통계를 재집계·공표
-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시계열 정비로 이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시계열 정비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 공표
 - 과거 시계열 정비 내용에 대하여 국가통계포털, 해당 통계연보, 통계설명자료를 통하여 정비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통계연보 설명 내용(2024년 통계연보 기준)>

- 출생 및 사망자 수는 국내 거주만 집계, 지연신고분을 반영하여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동태율 보정
 - 국외는 주소지가 외국(일본, 중국, 미국 등)인 경우로, 출생지와 관련이 없음.
- 출생·사망통계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혼인·이혼통계는 신고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수록
 - 출생·사망 신고를 발생 당해 연도에 하지 않은 지연신고분은 이듬해 4월까지 신고한 것을 발생 연도에 포함
- 각 표는 2024년 12월 31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1월~12월) 자료를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지역 기준(12월 31일)으로 재분류하여 집계
- 주요 인구지표 산출

◆ 출생·사망건수

- 1970~2007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년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2008~2024년
 - 해당 연도와 익년도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익년도 5월 이후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은 10년 주기로 시계열 정비시 반영

◆ 혼인·이혼건수

- 1970~1980년
 -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에 누적 집계함
 - 따라서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분이 추가되어 각 년도 연보의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1981~2024년
 - 해당연도에 접수한 신고서를 신고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 따라서 이전연도 발생 분은 포함되고, 지연 신고되는 해당연도 자료는 집계에서 제외됨

◆ 지표산출을 위한 연앙인구

- 1970~1992년
 -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한 장래추계인구(1996.12.)의 각 연도별 추계인구 이용
- 1993~2024년
 -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작성된 주민등록 연앙인구 이용

6. 유사통계와 일관성

□ 국내 유사 및 관련통계와 비교

- 인구동향조사와 유사한 통계조사는 없음
- 단,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서 주민등록신규생성과 말소에 대한 정보를 통해 출생과 사망자료가 일부 제공되고 있음
 - 행안부 자료는 행정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보고통계로서 인구동향조사와는 조사기준이 불일치하여 비교되는 통계는 아님

7.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간 차이의 크기 및 요인, 고려사항

-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월간 자료는 잠정치 공표 이후 연간자료에 대한 확정치가 공표되면 확정자료로 대체함
 - 연간단위로 출생과 사망통계는 잠정치 공표 이후 확정치로 공표
 - * 매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잠정 공표, 다음해 2월에 연간 출생사망 잠정 공표, 다음해 3월에 혼인·이혼 확정 공표, 다음해 8월에 연간 출생, 9월에 연간사망 확정 공표 (연간 확정 공표 이후 월간 자료는 모두 확정자료로 대체)
- 잠정치와 확정치를 공표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신속한 자료 이용을 위한 것으로

주요 항목에 대한 잠정결과를 우선 공표하는 것임

- 잠정결과는 13개월간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하고, 확정결과는 16개월간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자료(기아신고, 영아사망 등)를 보완하여 작성됨
- 잠정자료 작성 시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지연신고분과 추가 반영된 자료를 고려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확정치와 잠정치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적용
- 전년도의 신고별 지연율, 외부 행정자료를 활용한 추가보완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방식을 산정, 추정치 계산에 적용함

8.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8-1 통계공표 방법

☐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

- DB : 인구동향조사 통계표
- 통계보고서 : 온라인간행물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 출생 · 사망, 혼인 · 이혼편)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보도자료

☐ KOSIS 통계표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를 제공
- 경로: <http://kosis.kr/>

☐ 보도자료 제공

- 인구동향(매월)
- 출생·사망 잠정결과(2월)
- 혼인·이혼 통계결과(3월)
- 출생확정결과(8월), 사망확정결과(9월)
-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11월)
- 경로: <http://mods.go.kr/>

☐ 통계연보 제공

- 인구동태통계연보 인쇄물 제공(공공도서관, 지자체)
- 연보를 온라인간행물로 제작
- 경로: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설명자료 DB : <http://meta.narastat.kr>
- 메타정보 제공
 - kosis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 '인구동향조사' 검색
- 주요결과 그래프, 통계표, 의미분석 등 제공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인구동향조사' 검색
- 온라인간행물 제공
 - kosis(<http://kosis.kr>) - 주요통계표, 용어해설, 통계개요 설명

9.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9-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최종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원자료를 내검하여 중복제거 및 오류수정이 완료된 자료가 최종 마이크로데이터가 생성되며, 아래 생성 조건을 갖추
- MD생성조건:
 - ① KOSIS 통계표와 MD 집계수치가 일치
 - ② 파일설계서와 코드값 비교
- 항목 누락 여부 등

9-2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및 서비스 절차

- 품질점검(인구동향과 ↔ 조사시스템관리과)
 - KOSIS 통계표, 파일설계서를 참조하여 품질점검 수행
 - 품질점검 결과 인구동향과에 점검결과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치 후 결과 회신
- 이관요청(인구동향과 → 마이크로데이터과)
 - 통계개요, 파일설계서, 코드집 등 송부
- 자료생성(조사시스템관리과)
 - MD집계기준에 의해 MD자료 생성
- 자료제공범위 결정
 - 항목별 자료제공범위를 정하여 마이크로데이터과에 제공
- MD 서비스
 - 이용자가 MD자료를 요청하면 마이크로데이터과에서 인구동향과에 자료제공여부 확인요청
 - 인구동향과에서 자료 제공여부 검토 후 회신

10.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10-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

10-2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 제공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

- (제공 가능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 1981년 ~ 2024년
 - * 승인용 마이크로데이터: 1981년부터 (출생, 혼인, 이혼), 1983년부터(사망)
 - *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1991년부터 (혼인, 이혼통계), 1997년부터(출생,사망)
- 조사표 수록 항목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 출생 >

보고항목	제공여부	비 고
신고일자	○	
성별	○	
혼인중의자 여부	○	
출생일자(연,월)	○	
출생장소	○	
주소	○	읍면동 제외, 공공용 A형-시도, 공공용 B형-시군구
부모 연령	○	공공용 A형-각세, 공공용 B형-5세단위
부모 직업	○	12월 제공 예정(행정자료 연계)
부모 교육정도	○	
실제결혼일자(년,월)	○	
임신주수	○	
다태아 여부.출산순위	○	
출생아 체중	○	
모 총출생아수	○	
모 생존아수	○	
부모동거기간	○	
부모의 국적구분	○	다문화 공표 이후 12월 제공
부모의 국적	○	

< 사망 >

보고항목	제공여부	비 고
신고일자	○	
성별	○	
혼인 상태	○	
사망일자	○	
사망시각	○	
사망장소	○	
주소	○	읍면동 제외, 공공용 A형-시도, 공공용 B형-시군구
사망 연령	○	공공용 A형-각세, 공공용 B형-5세단위
직업	○	12월 제공 예정(행정자료 연계)
교육정도	○	
국적·이전국적	○	

< 혼인 >

보고항목	제공여부	비 고
신고일자	○	
남편·아내 등록기준지	X	시도 제공(2009년 까지 제공)
남편·아내 주소	○	읍면동 제외
실제결혼일자(년, 월)	○	
남편·아내 직업	○	
남편·아내 최종졸업학교	○	
남편 혼인종류	○	
남편·아내 혼인연령	○	
남편·아내의 국적구분	○	다문화 공표 이후 12월 제공
남편·아내의 국적	○	다문화 공표 이후 12월 제공

< 이혼 >

보고항목	제공여부	비 고
신고일자	○	
남편·아내 등록기준지	X	시도 제공(2009년 까지 제공)
남편·아내 주소	○	읍면동 제외
실제결혼일자(년, 월)	○	
실제이혼일자(년, 월)	○	
19세 미만 자녀수	○	
이혼의 종류, 사유	○	
남편·아내 최종졸업학교	○	
남편·아내 직업	○	
남편·아내 결혼연령	○	
남편·아내 이혼연령	○	
동거기간	○	
남편·아내의 국적구분	○	다문화 공표 이후 12월 제공
남편·아내의 국적	○	다문화 공표 이후 12월 제공

☐ 미공표 집계자료 제공 기준

-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항목에 대한 집계자료 제공 기준은 KOSIS 집계자료 제공 기준을 따르며 미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집계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국적 항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국 기준 5건 이하는 제공하지 않음
 - 국적구분이 귀화자 및 외국인인 경우, 국적에 대한 개별 집계 항목의 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귀화자 자료를 2010년부터 제공)

☐ 분석결과(집계표) 반출 시 유의사항

- 인구동향조사(출생) 중 출생년월일(일) 집계결과 수치가 5 미만인 셀은 「×」 표시로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반출

☐ 기타사항

- 개인식별정보 포함된 자료의 제공 관련
 - 인구동향조사는 응답자 보호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는 제공하지 않음
- 개인식별정보 포함된 자료의 이용 관련
 - 자료요청 당시 제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복제 및 대여 금지
 - 위반한 경우 향후 자료요청시 관련자료 제공 금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 응답자 노출위험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공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보고서 및 논문 등은 사본 1부를 인구동향과에 송부
- 마이크로데이터의 일부 항목에서 절사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하여 KOSIS, 보고서에 공표된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자료제공 및 보관용 전산자료 관리시 비밀보호

- 통계법에 따라 자료수집과 자료 비밀보호를 처리
-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전산입력시스템에 입력과 동시에 암호화처리하여 보호

1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조치

- (공표 자료) 집계표 형태로 가공하여 작성, 세분화되어 식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집계표에 대하여는 수치 제공하지 않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특정 항목을 집계하여 식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집계항목이 5건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출생·사망) 중 국적 구분이 귀화자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에서 국적에 대한 개별 집계 항목의 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귀화자 자료는 2010년부터 제공)
- 또는 연령구간 등을 통합하여 제공

1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통계법과 국가데이터처 자료제공 규정 적용

○ (자료수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제1항: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항: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보존용 자료 비밀보호) 국가데이터처 보존용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④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통계 기획 및 분석인력

□ 인구동향조사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성명	인원	구체적인 통계업무
과장	1	인구동태통계 총괄(기획.분석.결과공표)
4.5급	3	인구동향조사 총괄 및 출생통계(기획.분석.결과공표) 혼인.이혼통계(분석.결과공표) 사망통계(분석.결과공표)
6급	2	인구동향조사 총괄(행정), 자료처리.결과분석(연간)
7·8급	4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결과분석(월간 출생, 혼인.이혼, 사망) 조사 실시 및 시스템 관리.개선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전주기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내역

- 정기품질진단(2020년) 결과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관련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명확성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아래와 같이 이행완료함

개선과제명	세부개선과제	세부 추진사항
인구동태통계 접근성/명확성 향상	① 용어 및 개념 구분 명시 또는 통일 (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통계) ② 분류값 변경 이력 명시 및 변경 데이터 제공 ③ 인구동태통계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이용안내서 제공	< 이행완료 > ①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및 KOSIS 통계설명자료에 용어 및 개념 재정비 ② 행정구역(분류값) 변동에 따른 모든 KOSIS 통계표 주석 표기 ③ 인구동향조사 이용 안내서 작성 하여 MDIS에 제공
혼인 및 이혼관련 조사항목 대체 검토	○ 혼인 및 이혼관련 행정자료 활용 가능 항목 검토(직업 등)	< 이행완료 > - 2021년 통계개발원 연구 수행: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 직업항목 대체방안 연구 - 연구결과 직업 일치율(혼인 50~60%, 이혼 30~40%)이 매우 낮아 실효성 낮음 → 대체 불가 판단